

【 형법 】

1.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이 절취한 물건을 도둑인 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교사죄
- ② 장물보관죄
- ③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의 실체적 경합범
- ④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
- ⑤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

2.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탈퇴하더라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④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공동정범인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 ⑤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3. 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고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죄의 장애미수
- ② 특수강간죄의 중지미수
- ③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
- ④ 강간죄의 방조범
- ⑤ 협박죄의 공동정범

4.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② 행위자가 청각과 발음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⑤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5. 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사면된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한 죄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 ④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가석방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6.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이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②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음식점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접수인에게 그 처분권을 준 것이므로 절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④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한다.
- ⑤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甲의 승낙 없이 건물을 A에게 전대차하였고 A는 상당기간 평온하게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데, 자신의 승낙 없이 전대차한 사실을 뒤늦게 안 임대인 甲이 A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8. 다음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도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은 A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A녀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A녀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주겠다고 하면서 강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그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A녀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주관설에 따르면 甲에 대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④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면,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9.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에 객관적인 친족관계의 존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甲과 A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 ③ 유흥주점 업주가 과도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를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 ④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 ⑤ 은행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퇴근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에 대한 은행과의 공동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10.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그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
- ④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상해의 고의를 가진 자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1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③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뿔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별하지 아니한다.
- 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12. 명예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범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범죄의 종료시기이다.
- ③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④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이 게재되었다면 그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13.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더라도 폭행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제적 경합범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각 법조 중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록 자기명의로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의 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②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甲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기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⑤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15.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④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⑤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17.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경락물건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의 주소로 송달케 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영장을 소지했으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고 한 사법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甲이 자신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그 사건 담당 경찰관이 가지고 가서 찢어버리자면서 넘겨준 것을 넘겨받아 이를 찢어버렸다면 甲에게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토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8.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② 장물죄가 본범의 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라고 보는 이익설에 의하면, 대체 물건도 장물에 해당한다.
- ③ 장물죄가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을 추구하고 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라고 보는 청구권설에 의하면, 대체물건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비록 점유할 권한이 있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1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재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실제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③ 자신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⑤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만 한다.

20. 다음 사례 중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 ① 甲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甲으로 오인하여 乙을 살해한 경우
- ② 甲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甲을 살해한 경우
- ③ 甲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발사한 총알이 빗나가 乙이 사망한 경우
- ④ 살인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살인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승낙한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③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④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영사관 내에서 다른 중국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법 법규가 적용된다.
- 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乙 앞으로 뛰어든 丙이 그 총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한 상해 의사로 돌을 던졌으나 丙을 乙로 오인하여 丙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丙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원 아닌 甲이 공무원인 乙과 공동하여 丙으로부터 乙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고의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는 행위자의 죄책에 대한 결론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 ⑤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된다.

23. 甲은 권한 없이 乙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乙의 A은행 예금계좌로부터 甲 자신의 B은행 예금계좌로 백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자신의 B은행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이체된 백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정을 아는 丙에게 인출한 백만원 중 50만원을 교부하였다. 甲과 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丙은 장물취득죄
- ② 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丙은 장물취득죄
- ③ 甲은 절도죄, 丙은 범죄불성립
- ④ 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丙은 범죄불성립
- ⑤ 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丙은 범죄불성립

24. 다음 사례 중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논하는 실익이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 ① 甲을 살해할 고의였으나 乙을 甲으로 오인하고 乙을 살해한 경우
- ② 악수를 청하는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 ③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 ④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하고 타인을 살해하기 위해 격발한 경우
- ⑤ 甲을 살해하기 위해 비치해 둔 독극물을 乙이 음료수인줄 알고 마셔 사망한 경우

25. 다음 각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한 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 중감금죄가 성립한다.
- ②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 ③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 ④ 야간에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의 핸드백을 가져갔고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에 해당한다.
- ⑤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